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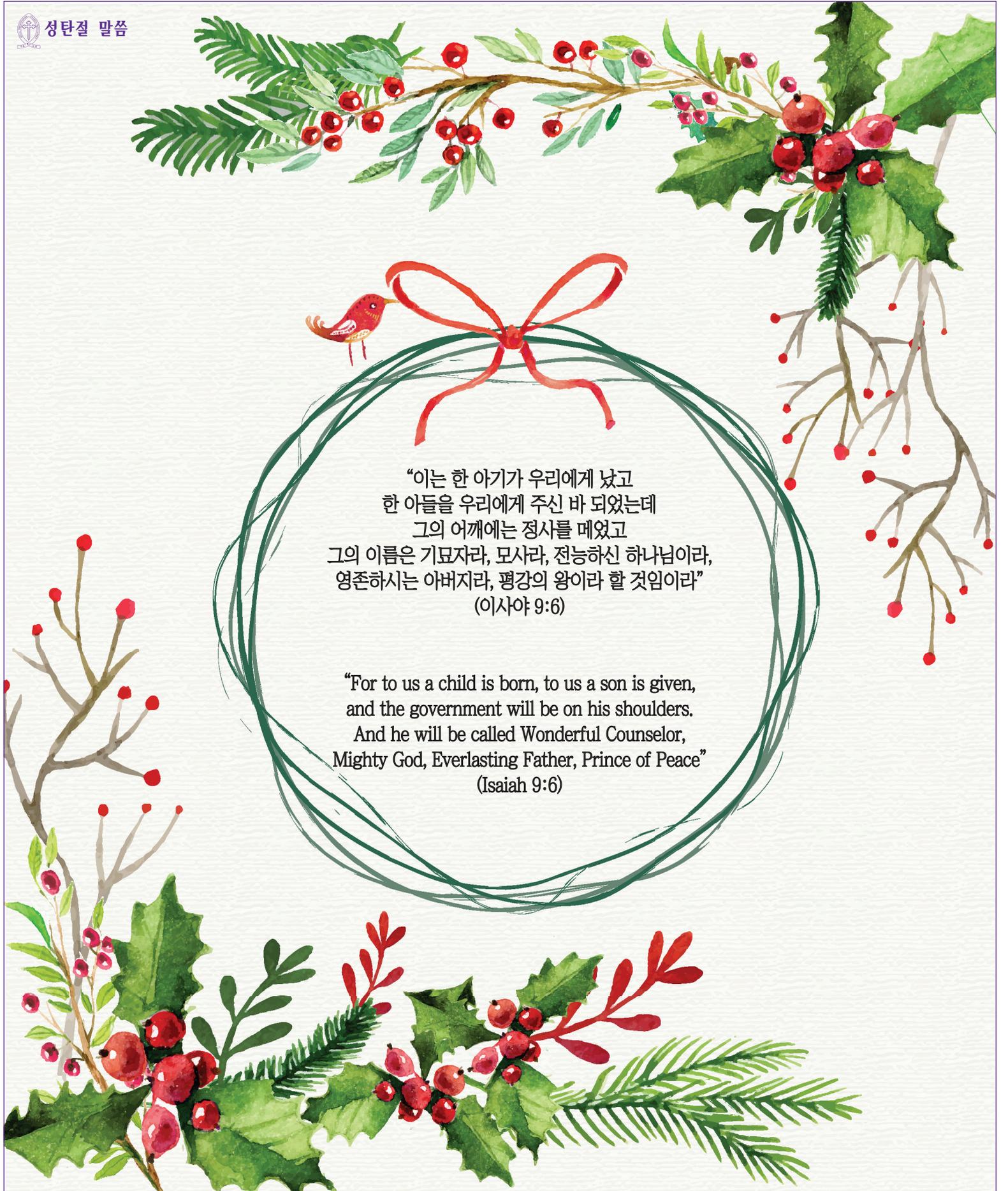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행동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성탄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Isaiah 9:6)

오늘 찬양예배 시 - 목사·장로 안식년, 향존직 은퇴식

- 예·결산을 위한 특별제직회·공동의회 무기한 연기 -

서울교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박노철 목사와 오광환 장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에 들어간다.

또한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 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이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와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올해 은퇴하는 분들은 서울교회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로 모시게 되며 이번에 은퇴하는 분들은 장로 3명, 집사11명, 권사 17명이다. 은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시무장로 : 오정수 최학인 홍성주
· 안수집사 : 강택근 김재근 김진환 김해수 김형배 서명조 안선광 오유식 이상호 이학주 천기성
· 시무권사 : 김경희7 김지은2 김화정 김희진 마은숙 박정옥 유덕자 유화자 이승희 이신정 이영인 이채봉 이혜순 임분도 전원순 황선희 황정민
또한 10월 정기당회, 11월 정기당회가 한건의 안건도 논의하지 못한채 파행되고, 12월 정기당회는 소집 조차 되지 않아 1년의 안식년을 끝낸 하인

선 장로에 대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당회에서의 재시무 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당회원들이 서면결의로 재신임 여부를 묻게되었으며 그결과 시무 당회원 32명의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하여 재신임을 받게됨으로 오늘부터 시무장로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마지막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와 새해 첫주 찬양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였으나 무기한 연기 되었다.



안식년을 맞이하는 박노철 목사, 오광환 장로



은퇴식을 맞이하는 오정수 장로, 최학인 장로, 홍성주 장로

박두호 장로 외 7인이 박노철 목사를 강남노회에 고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에 관하여

박두호 장로의 7명의 장로(홍성주 장로, 최학인 장로, 신용식 장로, 최양진 장로, 이동만 장로, 김금준 장로, 최차순 장로)가 박노철 목사를 노회에 고소하였다. 소송의 종류는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이며 소송의 내용은 향존직 당회의 신임투표, 공동의회 신임투표, 재시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소건에 대한 판결은 내일 (12월 26일) 강남노회재판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 재판건은 서울교회 당회도 모르는 행정소송으로 이종* 집사가 서울

교회밴드에 공지한 내용을 보고 교회측이 알게 된 내용이다. 또한 소장에 피고가 서울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장은 박노철 목사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이종*집사는 당회도 모르는 행정소송을 어떤 경로로 입수하였는지 당회와 교회 앞에 사실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위 담임목사를 지지한다는 측근들이 왜 담임목사를 상대로 강남노회에 고소하였는지 그 저의에 대해서는 성도들께서 판단하기 바란다

소 환 장

사건번호 : 서강남제 제59-168호

사 건 명 :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

고소인(고발인) : 1. 박두호 나이 67세 성별 남 직분 장로

장로 : 홍성주, 최학인, 신용식, 최양진, 이동만, 김금준, 최차순

피고소인(피고발인): 박노철 나이 51세 성별 남 직분 목사

위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 하오니 꼭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소재기에 대한 답변서를 1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재판일시 : 2016년 12월 26일(월) 오전 9시
2. 재판장소 : 서울강남노회 사무실

2016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재판국장 최기서 목사

재판국 서기 오경환 목사

박노철 귀하

결	재	지
이	자	시

소 장

원 고 박두호 나이 : 67 성별 : 남 직분 : 시무장로

시무장로 홍성주, 시무장로 최학인, 시무장로 신용식, 시무장로 최양진, 시무장로 이동만, 시무장로 김금준, 시무장로 최차순

피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210번지

행정소송의 종류 :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

행정행위의 내용 : 향존직 당회의 신임투표, 공동의회 신임투표, 재시무 등 내용

행정행위가 있는 날 : 2008년 9월 17일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 : 2015년 12월

청 구 취 지

1.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박두호 장로 외 6인이 부목사 4인을 강남노회에 고소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박두호장로외 6인(홍성주 장로, 최학인 장로, 최양진 장로, 이동만 장로, 김금준 장로, 최차순 장로)은 우리교회 부목사 4명(서명철 목사, 장석남 목사, 조원영 목사, 서준권 목사)을 강남노회에 고소하여 연임 청원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명철 목사 외 3명의 부목사는 우리교회 9월 당회에서 연임이 결정(순례자 1286호 참조)되었으나 박두호 장로외 6인의 장로는 이를 불복, 강남노회에 연임청원을 불허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고소의 내용은 상기 고소장에 있는바 고소의 내용이 합당한지는 성도들께서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

위 고소건에 대해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12월 28일(수) 서울교회 부목사 4명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총회헌법 정치 제27조 3항과 총회헌법 권징 제3조 2,3호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부목사 연임청원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요즘 서울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여 있어 이 분란을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부목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총회헌법 정치 제27조 3항은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서울교회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피고소인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흉내는 내지만 사실상 위임목사를 반대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2. 그 증거로 2016년 5월 9일에는 피고소인이 다른 부목사들과 함께 박노철목사를 만나서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카톡을 보내왔는데(첨부자료 #1) 만나서 박노철목사에게 한 대화내용을 들어보니 "원로목사-교절권아-폭로되었고, 그 폭로자가 담임목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거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담임목사로부터 돌아섰다. 지금 공동의회를 하면 필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별히 청년부의 3분의 2는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있고, 3분의 1도 중립이지 담임목사 지지가 아니다" 등 이라고 하면서 박노철목사에게 사임을 종용하였습니다.

3. 그것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몇몇 유력한 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담임목사에 대한 부담을 하며 사임해야 옳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니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상기의 유력한 권사들을 찾아다니며 "설교를 듣는 중에 아멘하지 마라. 찬송부를 때 박수치지마라"라고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첨부자료 #2).

4. 또한 피고소인은 교회 소식지이며 전도지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순례자"의 지도목사로서 발행인인 담임목사의 관리하에 공정한 발행을 도와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를 축출하려는 세력과 결탁하여 불공정하게 발행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있습니다(첨부자료 #3,4).

5. 결어

이장 살핀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헌법 정치 제27조 3항과 총회헌법 권징 제3조 2,3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부목사를 중에서도 선임자로서 위임목사를 잘 보필하여 교회를 안정시키는 데 책임을 다하여 후배 부목사들과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여야하나 위임목사를 반대하여 교회를 분란시키는 세력들과 야합하여 오히려 교회를 더욱 분란시키는데 협력하는 언행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피고소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혐의 및 의혹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노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간절히 요청하며 죄과가 밝혀지면 부목사 연임청원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참 고 자 료

1. 담임목사와의 카톡내용(면담요청)
2. 사실확인서(3부)
3. 담임목사와의 카톡내용(순례자발행)
4. 불벌로 발행된 순례자

고 소 장

고 소 인 1. 박 두 호 (1949년9월24일생, 직분 : 서울교회 장로)

2. 홍 성 주 (1947년3월10일생), 직분 : 서울교회 장로)

3. 최 학 인 (1946년1월17일생, 직분 : 서울교회 장로)

4. 최 양 진 (1951년12월12일생, 직분 : 서울교회 장로)

5. 이 동 만 (1955년9월2일생, 직분 : 서울교회 장로)

6. 최 차 순 (1960년6월9일, 직분 : 서울교회 장로)

7. 김 금 준 (1959년3월2일생, 직분 : 서울교회 장로)

피고소인 서명철목사 (1953년10월3일생, 직분 : 서울교회 부목사)

피고소인 1. 장석남 목사 (1965년3월12일생, 직분 : 서울교회 부목사)

2. 조원영 목사 (1976년12월7일생, 직분 : 서울교회 부목사)

3. 서준권 목사 (1979년5월20일생, 직분 : 서울교회 부목사)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총회헌법 정치 제27조 3항과 총회헌법 권징 제3조 2.3호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총회 헌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목사 연임청원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요즘 서울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여 있어 부목사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때입니다. 총회 헌법 정치 제27조 3항은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서울교회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조원영 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흉내는 내지만 사실상 위임목사를 반대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2. 심지어 2016년 5월 9일에는 장석남 목사 등 다수의 부목사들이 박노철 위임목사님을 만나서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카톡을 보내왔는데 (첨부 자료 #1). 위임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원로목사 표절건이 폭로되었고, 그 폭로자가 담임목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 담임목사로부터 돌아섰다. 지금 공동의회를 하면 필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별히 청년부의 3분의 2는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있고, 3분의 1도 중립이지 담임목사 지지자가 아니다. 쫓겨나가면 퇴직금밖에 받지 못한다. 전별금을 받으려면 지금 사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서울교회 다수 장로들이 작당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위임목사를 완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비성경적행위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뵈히 말하면서도 이러한 일로 심히, 어려운 형국에

있는 위임목사를 도와 교회와 특히 성도들을 안정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목사들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과 회유를 했습니다.

3. 장석남 목사는 서명철 목사와 함께 권순단 권사와 정정숙 권사 등을 찾아 다니면서 담임목사에 대한 협담을 하며 사임해야 함이 옳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니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근에는 위임목사 퇴출 운동을 하는 "사서함"이라는 밴드에 장석남 목사가 가입하여 활동을 하는 등, 결코 부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총회 헌법 정치 제 27조 3항에 의배되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2)

4. 조원영 목사는 위임목사 퇴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를 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목사의 위치에서 위임목사를 퇴출시키고자 시위하는 것을 배후에서 도울 수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첨부 자료 #3)

5. 서준권 목사는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위임목사에 대한 은근한 비방을 서슴치 않으며 박노철 목사가 사임해야 함이 옳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니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근에는 위임목사 퇴출 운동을 하는 "사서함"이라는 밴드에 서준권 목사가 가입하여 활동을 하는 등, 결코 부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총회 헌법 정치 제27조 3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4)

6. 피고소인들은 분명히 총회 헌법 정치 제27조 3항, 즉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해야 한다는 사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7. 결어
당회원 다수를 등에 업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총회 헌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라고, 연임 청원을 불허해주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울교회 시무장로 7명의 연명으로 청원하오니 서울교회가 총회와 노회에 큰 협력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도록 감남노회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암망합니다.

위탁재판 청구는 불가하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박노철 목사가 당회의 처리권을 무시하고 위탁 재판으로 한 후 처벌을 논의하던 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한다는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 권징 제 2장(재판국) 제 4절(당회 재판국) 제 26조(심판사항) 제 2항에 근거 당회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로마서 1:17, 레위기 19: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중로구 대현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9212) 전송 (02)741-4350 담당: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298호
시행일 2016. 12. 14.
수신 서울감남노회장
참조 서기
제목 헌법해석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 1. 귀 노회 "서감남 제58-206호 헌법사항 질의서(2016.10.6.)" 건 관련입니다.
- 2. 위 관련근거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해석 : 질의 가),나),다),라)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 제2항에 근거 당회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처벌을 논의하던 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최근 서울교회 박노철 당회장 겸 담임목사의 목회와 관련하여 당회원 장로 27명중 18명이 담임목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8명이 지지하는 입장, 1명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도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비판적인 측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간에 밴드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B권사가 A집사에 대하여 작성문 문서가 카톡을 통하여 유포된 문제로 당회에 명예훼손 사유로 고소가 제기되어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회장은 고소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를 완료한 후 재판국 구성단계에서 당회 재판국을 구성하여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당회 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당회에서 권징사건 심리기일을 정하여 피고소인에게 통지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기소위원장으로서 조사를 담당하였던 장로로부터 그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필요한 처벌을 논의하던 중, 당회장은 헌법 제121조 제2항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3항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소속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위 당회에서의 책별 내용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귀회에 헌법적 유권해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가) 헌법 권징 제121조 2항에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 또 제121조 3항에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당회장의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질의 나) 위 사실관계 정리에 본 바와 같이 당회원 장로들 사이에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는 상황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 121조 제3항의 '기타 치리 회의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중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 ③기타 당회 또는 제직이나 공동의회 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위 사건이 같은 헌법시행 규정 제72조 제4항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견 질의 내용에서는 제외함)에 관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 다) 당회장은 위 A집사와 B권사와의 고소사건 이외에 추가로 다른 교인들간의 문제로 신규 접수된 고소,고발 건에 대하여 아직 기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를 적용하여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다고 하는바 이에 관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 라) 헌법 제121조 제2,3항 '당회 재판국이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치리회 사정상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라고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끝).

총회장이 성
헌법위원장 고 백



장로 은퇴식을 앞두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정수 장로

1991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서울교회가 설립되고 25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오늘 시무 장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와 함께 제가 한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요, 오로지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려온 길이였음을 고백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은퇴하게 됨에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바로 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에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 하셨는지, 어떻게 개입 하시고 동행해 주셨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교회는 성도들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공한 교회입니다. IMF 환란 속에서 건축주가 시공을 겸할 수 있는 건축법의 개정을 유일하게 적용받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벽돌이 아닌 기도로, 기술이 아닌 비전으로,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직접 건축한 곳이 바로 서울교회입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성도들 서로가 저녁이 되면 교회로 달려와 공사장 쓰레기들을 치우고 밤새워 건축현장을 지키면서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한 가지를 놓고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일 보다는 힘들고 고통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서로가 합심하고 하나 되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던 곳이 서울교회입니다. 비나 눈이 오면 일을 중단 해야만 하는 콘크리트 바닥 타설 공사와 외벽 공사를 하던 때마다 맑은 날만을 허락 하신 하나님께서 지붕이 덮이고 교회가 완공되어 입당 예배가 드려지던 2000년 크리스마스 날에 비로소 평평 내리게 하시던 함박눈을 보며 감격하고 눈물 흘리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서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쉼 없이 나아가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은퇴자로서 서울교회가 누구의 교회도 아닌 나의 교회, 내 사랑 서울교회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말씀 아래 하나 되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 하겠습니다.

서울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이념 속에서 천국 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교회 3대 목표를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감치 신학 세미나, 순결 서약식, 흥해작전, 사명자 대회, 농어촌 100 교회 운동, 비전 2020운동, 탈북난민 UN 청원운동, 기독교 교도소 설립 법제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새 번역, 장로교의 날 선포,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칼빈길 명예도로 지정, 장로교 한 교단 단체 운동, 총회 표준 주석 편찬 등 서울교회는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초 교파적인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마다 때마다 눈물로 순종하고 헌신하신 성도님들의 수고의 땀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서울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이 떠올라 은퇴를 앞둔 이즈음 저는 감사의 기도가 넘쳐흐릅니다. 교회는 아직 예배당건축비도 갚지 못했지만 지적장애아들을 위한 호산나대학을 세우는 일을 미룰 수 없어 아가페 타운 부지를 구입하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과 미진한 것들에 대해서 한없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 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소임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 하겠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는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

김한나 성도(14교구, 김창훈 집사, 전정순 집사 장녀) 것이 재앙이라 느낄 수 있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였고 주님이 정해주시길이며 이 사고로 인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 힘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김한나 성도(14교구, 김창훈 집사, 전정순 집사 장녀)

저는 2015년 3월 4일에 상상도 못했던 사고를 당하고 척추손상으로 장애인인 된 김한나입니다.

이번 겨울에 의료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천간 14시간이란 긴비행을 통해 한국에 왔고, 무사히 도착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서울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기도해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저를 통해 하신것으로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걱정했던것 보다 공공기관의 시설이 잘 되어있는 점에 대해 한국도 장애인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있음에 또한 기쁩니다. 한국에 잠시 있는 기간이지만 여기에서도 캐나다에서와 같이 장애자가 살아가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럴때마다 지금까지 재활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미래가 암울하지만 말씀을 상기하면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는 말씀은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을 뻔 한 곳에서 저를 이렇게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시며 장애를 입고 힘들다 하며 살아가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이 사고로 나를 어느길로 인도하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나에게 주신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길에 더욱 쓰임을 받을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신앙으로 이런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굳게 서지 못하고 1분 1초 심정의 변화가 너무 많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저의 신앙이 더욱 강해져 이런 믿음을 강하고 굳게 펼쳐져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겪는 장애인이라는 삶, 저에게 생각하지 못 하는 2차, 3차 사고가 항상 눈앞에 드리워져있지만 어리석어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의 깊은 통찰력으로 저의 안전과 평안이 저와 저의 가족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50일간의 한국의 친척, 친지 방문과 의료진의 만남을 마친후 다시 캐나다로 가서 잔수술과 재활과 학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마음 굳게먹고 다시 살게 된 삶을 풍성하게 이어갈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쁜성탄과 새해에 가정과 서울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비전2020운동·농어촌100교회운동·한가정한선교사 후원 교회예산에서 집행기로

매년마다 성도들에게 후원접수를 받았던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을 2017년에는 교회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였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은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목회하는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여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며 또한 Vision2020 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

음화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군입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운동은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는 운동이다.

내년에도 교회의 예산에서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18일 주일 2부 예배 시 2016년 올해 마지막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1,2,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 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이주영 홍지희 강지혜 박승현 계 4명
- 입교자 : 주성태 김중훈 정건 장하량 정민서 신동훈 계 6명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6일(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28일(수) 종교개혁500주년 공동학술대회 섬김의원 4차 모임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 마리아 전도회(12/25)

■ 금주의 식사제공 : 오치열 장로 하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2016년 70인 전도대 전도상

- 전도상 : 축호팀의 인내팀
- 인내팀 : 김정숙3 권사, 김경자6 집사, 김영화4 집사, 김수진5 집사, 김춘애 성도, 이윤희 집사, 유혜영1 권사, 유영희1 집사, 정미애 권사, 제영진 집사, 채명숙 집사(총 11명)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 seoulch@hanmail.net
-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⑥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2016년도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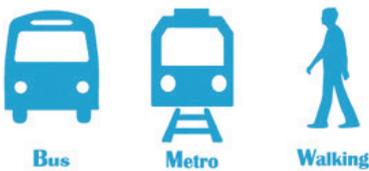
- 1 교구 : 류순임, 백명자, 유선희1, 김애리
 - 2 교구 : 배은희, 안창휘, 정봉금, 최형열, 주정희
 - 3 교구 : 김수원, 배재송, 이경구, 이순례, 이해순, 임본도, 이채봉
 - 4 교구 : 김복녀, 이승민, 이승희, 이춘희, 홍광숙, 윤복순
 - 5 교구 : 강희자, 김혜연, 이영주, 이광열, 이상은, 임선철, 최학인, 최미아, 최소희,
 - 6 교구 : 김희진, 이춘실, 임순자, 황보추자
 - 7 교구 : 김영례, 정연택,
 - 8 교구 : 임윤자, 지원준
 - 9 교구 : 김미자, 김진숙, 김찬웅, 이부자, 송옥혜
 - 10 교구 : 임훈규,
 - 11 교구 : 김태욱, 김재중, 김정자, 이경희2, 이윤희, 이흥기, 전배호, 조정옥, 국산옥
 - 12 교구 : 김인순, 김형택, 남정열, 박명석, 송성식, 정희순, 이기숙
 - 13 교구 : 김동진, 김순진, 박성희, 손성실, 오정숙, 주화인, 장정옥, 최금봉, 정영애, 차인화, 홍건표, 송희경
 - 14 교구 : 김성순, 원명희, 박정자, 최낙준, 최태욱,
 - 15 교구 : 문남이, 이성자
 - 16 교구 : 이규희, 정복순
- 총 82명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도록
2. 2016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2017년 새해를 잘 계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은퇴하시는 항존직분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이 심어놓은 섬김과 기도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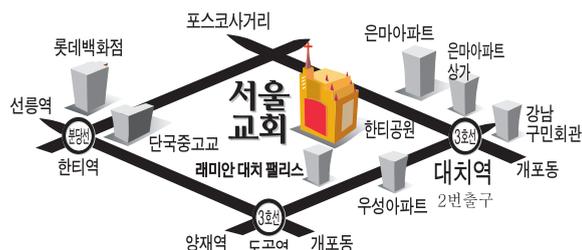
B.M.W.운동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